202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 안 번 호	130

제안연월일 : 2023. 5. .
제 안 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2023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고 평창군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체육진흥기금

대회 유치 및 개최를 통하여 평창군 체육발전 도모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체육지원 사업비로 편성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나. 고향사랑기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에 따라 모금·접수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평창군 고향사랑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함.

다. 옥외광고발전기금

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라. 식품진흥기금

2022년 식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마. 기금운용계획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계 획 액	기정계획액	비교증감
총 계	26,222,059	25,982,059	240,000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739,688	13,739,688	-
평창군체육진흥기금	**2,978,030**	**2,978,030**	**-**
평창군자활기금	503,005	503,005	-
평창군고향사랑기금	**240,000**	**-**	**240,000**
평창군재난관리기금	1,784,928	1,784,928	-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179,016**	**179,016**	**-**
평창군식품진흥기금	**162,372**	**162,372**	**-**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6,635,020	6,635,020	-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고향사항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59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